

1. 개정 이유

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, 국·공립 연구기관 등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785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됨에 따라, 중대연구실사고 범위를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으로 재정립하고,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비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연구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에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’을 포함하며, 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, 관계기관 모두 사고보고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연구실사고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‘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’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을 중대연구실사고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실 안전예산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기관에 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’을 포함함(안 제13조)
- 다. 중대연구실사고 등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및 공표 주체를 정함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

2) 입법예고(2024. 2. 8. ~ 3. 1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구실에서”를 “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(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)”를 “(법 제2조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”를 각각 “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구주체의 장은”을 “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)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3호에서 “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”란 <u>연구실에서</u>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	제2조(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)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</u>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) 연구주체의 장(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)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.	제13조(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) - -----(<u>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바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</u>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) ① <u>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</u>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	제14조(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) ① <u>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</u> ----- ----- -----

부장관에게 전화, 팩스,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·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.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

-----.

③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

-----.